

**무배당
ABL THE케어간병보험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404**

을 말합니다.

제 5조 [“간병인”, “간병인 사용”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간병인의 주요 업무(예시)]

침대높낮이 조절, 화장실 부축, 체위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보조, 휴식돕기, 변기사용 보조 등

② 제1항의 사업자는 간병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 코드 기준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간병서비스라 함은 간병인이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 지원, 정서 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제5항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④ 이 특약에 있어서 “간병인(을) 사용”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의한 간병인을 사용할 경우를 말합니다.

⑤ 이 특약에 있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 함은 의료법 제4조의 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말합니다.



용어해설

발생하여 2가지 이상의 보험금 지급사유를 충족한 경우 해당일에 대하여 가장 높은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1.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요양병원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에서 간병인 사용으로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⑬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2호의 사용일수는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일수 1일로 계산합니다. 즉, 1일당 8시간 미만으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⑭ 제5조(“간병인”, “간병인 사용”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的 정의)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인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간병인 사용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설명

[보험금 지급 예시]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한 기간

 : 2022년 7월 6일부터 2022년 9월 16일까지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며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기간

 : 2022년 7월 15일부터 2022년 8월 15일까지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기간

 : 2022년 8월 16일부터 2022년 9월 10일까지

 • 간병인 사용 지원 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 지급 대상 사용일수 : 32일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지원 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 지급 대상 사용일수 : 26일

⑮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및 제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를 준용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설명

보험수익자가 다수인 계약에서 그 중 1인이 피보험자를 고의로 해친 경우에는 그 1인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다른 보험수익자에게는 그 1인에 지급할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용어해설

[고의]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심신상실(心神喪失)]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10조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장해진단서, 입원확인서, 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수령, 계약자적립액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원간병인 사용확인서(회사양식)
 2. 간병인 사용 영수증(사업자 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 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 ③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 종사자 등의 사실 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 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⑤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여부 및 사용일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합니다.

제11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10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 사유,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 및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